

한국어·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

□ 제정 : 2011. 06. 0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어·문화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

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시간강사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인문사회계열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여

야 하며,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.

제3조(위촉절차) 시간강사는 매 학기 개강 7일전에 교학부장의 추천으로 한국어·문화교육원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촉기간)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.

제5조(담당시간) 시간강사의 담당시간은 주9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5시간 이내

에서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.

제6조(강의평가)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강하는 모든 강사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

며, 평균 3.5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한다.

제7조(위촉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재위촉)할 수 없다.

1. 현직 중·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자
2. 인사서류 부실 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해촉된 자
3. 종래 출강률이 2/3에 미달되는 자
4. 교수의 품위 및 능력이 결여된 자
5. 강의평가에 의한 2회 경고자

제8조(해촉) 시간강사가 제7조의 2항, 4항 또는 담당과목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

학기 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강사료)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수원대학교 시간강사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제출서류) 시간강사 위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

류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추천서(본원 양식) 1부
2. 학력증명서(최종학위취득 또는 수료증명서) 1부

3.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(자격확인용) 1부
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1조(의무) 시간강사는 본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담당과목의 강의·학사관리업무(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

력, 시험 및 성적공시와 전산입력 등)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